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김석기·김종양·이만희  
이헌승·유용원·김기웅  
유상범·김기현·권영진  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, 재료,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4조의3 신설).



##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전자적 방식에 의한 표시)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

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한 인식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표시의무자는 식품등에 표시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4조의3(전자적 방식에 의한 표시)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한 인식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표시의무자는 식품등에 표시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